



외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성과와 '24년 주요 외투지원 방향 공유

-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간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18.(월) 서울 대한상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주한 외국상의, 외투기업 등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투자정책 현황과 올해 외국인투자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 및 외투기업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KOTRA IK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외국인투자 성과와 '24년 본격 시행될 주요 현금·입지 지원 관련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올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이 발굴하거나 접수되었던 외투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그간 산업부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상호 협력하여 외투기업 간담회, 개별 기업 현장 방문 등 현장밀착형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협의를 진행하였다.

외투기업들은 주로 지식재산권, 의료, 금융, 환경, 인증 분야에 대해 건의해 왔으며, 금번 주요 개선 사례로는 ①외환거래 신고대상 금액 상향(연간 3천→5천만불, (누계)), ②원화에대율 적용대상 기준 완화(원화대출금 2조→4조원 이상), ③불법위조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기준 마련, ④양극재 물질의 유해성 등급 고시 유예로 기업의 수출에 따른 포장 부담 완화, ⑤친환경 소재인 할로젠 프리 파워코드 인증 기준 마련을 들 수 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외투기업들의 한국경제와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 최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3분기 기준, 239억불)을 달성” 하였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며 외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4070)
		담당자	서기관	박수정 (044-203-4071)
		담당자	사무관	임승윤 (044-203-4077)

참고1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간담회 개요

□ 개최 배경

- 미·EU·日·中 등 주요국 상의, 외투기업과 직접 소통을 통한 투자애로 해소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2.18일(월), 14:00~15:30/ 대한상의 EC룸
- 참석자 : 무역투자실장, 주한외국상의 대표 등 20명
 - (정부) 무역투자실장, 투자정책국장
 - (외투업계) 미국·유럽(ECCK, 獨, 佛, 英)·일본·중국 상의 대표, 외투기업 대표 등 16명
 - * 노벨리스코리아, 동우화인켐, 에어리퀴드코리아, RWE코리아, 한국지멘스 등
 - (유관기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KOTRA Invest KOREA 대표
- 주요내용 : ①'23년 외국인투자 제도 변경사항 설명, ②규제개선 성과·사례 발표, ③외투기업 건의사항 수렴 및 자유토론

□ 진행 순서

시간	세부내용	비 고
14:00-14:03(3')	개회 및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03-14:06(3')	모두발언	무역투자실장
14:06-14:16(10')	'23년 외국인투자 성과 및 제도현황	산업부
14:16-14:31(15')	'23년 외투기업 규제개선 성과·사례 발표	옴부즈만실
14:31-15:30(59')	건의사항 수렴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참고2

규제개선 사례(5개)

건의과제	소관부처
<p>1. 외환거래 신고대상 완화 <개선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외환거래 관련 규제 및 신고사항이 엄격하여 기업활동을 저해 -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 완화 및 신고사항 축소가 필요 ○ (개선내용) 외환거래 관련 규정* 개정('23.7) * 기재부 고시 제2023-36호, 외환거래규정 개정 - 해외송금 거래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금액기준 확대 : 연간 5만불 → 10만불 -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상향 : 연간 누계 3천만불 → 5천만불 - 은행 사전신고 유형들을 선별 폐지하고,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기재부
<p>2. 원화에대울* 적용대상 기준 완화 <개선완료></p> <p>*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내는 비율 ⇨ 은행의 과도한 신용팽창 억제 및 예수금 위주의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규제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시중은행과 달리 한국 내에서 소비자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원화예금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움 ⇨ 해외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고 있으나,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는 상한액에 한계가 있음 ○ (개선내용)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원화에대울 규제 개선 방안 발표('23.4),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3.7) - 원화에대울(100%이하 유지) 적용대상 기준 완화(원화대출금 2조 이상 → 4조 이상) -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 확대 : 외은지점의 본지점 장기차입금 전체와 본지점 단기차입금의 일부(본지점 장기차입금의 50% 한도)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 	금융위
<p>3.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기준 마련 <개선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우리나라 지재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으로, 선고 형량은 현저히 낮음 ⇨ 불법 위조품 유통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됨 * 저작권법 침해시 최대 5년 징역, 최대 5천만원 벌금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침해시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벌금 ○ (개선내용) 대법원 양형위원회(제9기)가 양형 정비 대상으로 채택('23.6)하고, 정비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할 예정 * 특허청은 양형위에 적극적 의견 개진 및 공청회 참여 예정 	특허청 대법원 (양형위)
<p>4. 양극재 물질의 유해성 등급 고시 유예로 기업 수출에 따른 포장 부담 완화 <개선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2차전지 양극재 물질 NMC(리튬+니켈/망간/코발트)에 대해 화평법의 물질등록('21.末) 후, 환경과학원 유해성심사 결과로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구분 1*"을 받음('22.6) * "구분 1" 결과를 가진 화학물질은 해상운송시 위험물 포장 의무가 있음(화학물질의 국제운송에 관한 규칙) - 신뢰도 높은 실험 데이터 생성을 위해 독일 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을 시작하려는 중, 과학원은 NMC의 유해성 결과를 "구분 1"로 공지하는 행정예고 시행('23.7) - NMC는 세계적으로 위험물 포장을 하지 않는 물질(구분 3)로, 해당 공고 확정시 한국에 소재지를 둔 회사만 2차전지 양극재 수출시 위험물 포장을 해야 하는 부담 발생 ○ (개선내용) 과학원은 NMC 실험 데이터 생성 완료까지 고시 유예 결정('23.9) 	국립환경 과학원
<p>5. 친환경 소재인 할로겐 프리 파워코드 인증기준 마련 <개선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친환경 소재인 할로겐 프리 파워코드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기준상 인증 미허용 ○ (개선내용) 미국 UL 인증 등 해외기준을 적용하여 KC 인증 시험을 허용할 예정 - '24년 초 전문위원회를 통해 해외기준 적용 타당성 검토하겠음 	국가기술 표준원